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고체위험물질의 운송서류 기재 기준, 액상화물질의 수분함량 증명 방식 등 「고체화물의 안전운송에 관한 국제규범」(IMSBC CODE: International Maritime Solid Bulk Cargoes Code)의 개정사항을 국내 법에 수용하여 산적 고체화물 등 특수화물의 안전한 선박운송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체위험물질의 운송서류 기재 기준(안 제16조의5 제3항)

운송하고자 하는 화물이 고체위험물질인 경우 운송서류에 기재하는 품명(BCSN)의 세부내용을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에 수록된 위험물 명칭에 따라 구분하여 기록하도록 규정

나. 액상화물질의 시료채취 절차 및 방법(안 제19조의2 제1항)

액상화물질의 시료채취 절차 및 방법에서 시료 채취 후 선적 전에 비나 눈이 내린 경우 시료 채취 이외의 방법으로도 액상화물질의 수분함량이 운송 허용치 미만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기관 협의 예정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전

3) 행정규제 : 사전 심사예정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일부개정령(안)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5제2항 중 “하며, 고체위험물질인 경우 그 품명 옆에 UN번호를 적고”를 “하며”로, “표기하여야”를 “기재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화물이 고체위험물질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운송서류에 다음 각 호에 따른 품명(BCSN)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고체위험물질의 명칭이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에 수록된 포괄(包括:generic) 품명 또는 N.O.S.(달리 명시된 품명이 없는 것) 품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제해상위험물규칙의 품명(PSN, Proper Shipping Name)과 UN번호
2. 고체위험물질의 명칭이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에 수록된 포괄(包括:generic) 품명 또는 N.O.S.(달리 명시된 품명이 없는 것) 품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른 내용. 단, UN번호 2912, 2913 및 3077에 해당하는 물질은 제외한다.
 - 가. 물질의 화학 또는 전문(Technical) 명칭
 - 나. 물질의 특성을 나타내는 구체적인 설명
 - 다. UN번호

제19조의2제1항 중 “채취되어야 하며, 시료 채취 후 선적일 전에 비나 눈이 내린 경우에는 다시 채취하여야 한다”를 “채취되어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료의 채취 및 시험 시점과 선적 시점 사이에 비나 눈이 내린 경우 하송인은 시료의 재(再)채취 및 재(再)시험 결과 또는 시료의 채취 이후에 화물이 비나 눈에 노출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장할 수 있는 서류 등 화물의 수분함량이 운송허용수분치 미만이라는 것을 보장할 증거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선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별표 3의 고체위험물질란 중 물과 반응하면 가연성 가스를 방출하는 물질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물과 반응하면 가연성 가스를 방 출하는 물질	4.3	4	4	2	2	X	2	X	1	X	2	2	X	2	2	1	X
--------------------------------	-----	---	---	---	---	---	---	---	---	---	---	---	---	---	---	---	---

별지 1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물정보신고서

CARGO INFORMATION for Solid Bulk Cargoes

고체화물 ☐	품명 BCSN			
고체위험물질 ☐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에 따른 품명(PSN)		유엔번호 UN No.	
	화학 또는 전문 명칭 Chemical or Technical Name			
	특성을 나타내는 구체적 설명 Specific description to identify the properties of the material			
운송명/수단 Name/means of transport			운송서류번호 Transport document number	
적재항 Port/place of departure			양하항 Port/place of destination	
운송인 Carrier				

하송인 Shipper	성명(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 성명) Name/status, company/organization	전화번호 Telephone Number
	주소 Address	
하수인 Consignee	성명(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 성명) Name/status, company/organization	전화번호 Telephone Number
	주소 Address	

화물 명세* General description of the cargo*	화물 형태 Type of material		운송허용수분치 Transportable moisture limit	
	입자 크기 particle size		선적 시 수분량 Moisture content at shipment	
	총량(m/t) Gross mass(kg/tonnes)		적하계수(m³/t) Stowage factor	
	정지각 Angle of repose		짐고르기 절차 Trimming procedures	
	그룹 분류 Group of the cargo	☐ 그룹 A 및 B Group A and B ☐ 그룹 A Group A ☐ 그룹 B Group B ☐ 그룹 C Group C		

위험물 특성* Relevant special properties of the cargo*	잠재적 위험성 Specifications of bulk cargo		
	해양환경 유해화물 여부 (MARPOL 1973/78 부속서5자 부록 I) Classification as harmful to the marine environment in accordance with appendix I of Annex V of MARPOL1973/78	☐ Yes ☐ No	
	위험물 분류 또는 고체화학물질 Class & MHB		
	지침 또는 그 밖의 사항 Instructions or other matters	*	

확인서 Declaration	위 위탁화물의 정보가 완전하게 정확히 기술되었고 본인의 지식과 신념에 비추어 기재된 시험결과 및 내용이 정확하며 또한 본인이 선적화물의 대리인임을 확인합니다. I hereby declare that the consignment is fully and accurately described and that the given test results and other specifications are correct to the best of my knowledge and belief and can be considered as representative for the cargo to be loaded.
---------------------------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의5(화물정보의 제공)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운송서류에는 고 체화물의 품명(BCSN, Bulk Car go Shipping Name)을 적어야 하며, <u>고체위험물질인 경우 그</u> <u>품명 옆에 UN번호를 적고, 폐기</u> <u>물인 경우 그 품명 앞에 "폐기물</u> <u>"(WASTE) 이라고 표기하여야</u> <u>한다.</u>	제16조의5(화물정보의 제공) ① (현행과 같음) ② ----- ----- ----- ----폐기물인 경우 그 품명 앞 에 "폐기물"(WASTE) 이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신 설>	③ <u>화물이 고체위험물질인 경우에</u> <u>는 제1항에 따른 운송서류에 다</u> <u>음 각 호에 따른 품명(BCSN)을</u> <u>기재하여야 한다.</u> 1. <u>고체위험물질의 명칭이 국제</u> <u>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에</u> <u>수록된 포괄(包括:generic) 품명</u> <u>또는 N.O.S.(달리 명시된 품명</u> <u>이 없는 것) 품명에 해당되지 않</u> <u>는 경우에는 국제해상위험물규</u> <u>칙의 품명(PSN, Proper Shippin</u> <u>g Name)과 UN번호</u> 2. <u>고체위험물질의 명칭이 국제</u>

	<u>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에 수록된 포괄(包括:generic) 품명 또는 N.O.S.(달리 명시된 품명이 없는 것) 품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른 내용. 단, UN번호 2912, 2913 및 3077에 해당하는 물질은 제외한다.</u> <u>가. 물질의 화학 또는 전문(Technical) 명칭</u> <u>나. 물질의 특성을 나타내는 구체적인 설명</u> <u>다. UN번호</u>
<u>③ (생 략)</u>	<u>④ (현행과 같음)</u>
제19조의2(시료채취 절차 및 방법) ① 액상화물질의 수분 측정을 위한 시료는 선적일 전 7일 이내에 채취되어야 하며, <u>시료 채취 후 선적일 전에 비나 눈이 내린 경우에는 다시 채취하여야 한다.</u>	제19조의2(시료채취 절차 및 방법) ① 액상화물질의 수분 측정을 위한 시료는 선적일 전 7일 이내에 채취되어야 한다. <u>다만, 시료의 채취 및 시험 시점과 선적 시점 사이에 비나 눈이 내린 경우 하송인은 시료의 재(再)채취 및 재(再)시험 결과 또는 시료의 채취 이후에 화물이 비나 눈에 노출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장할 수 있는 서류 등 화물의</u>

② ~ ④ (생략)	<u>수분함량이 운송허용수분치 미만이라는 것을 보장할 증거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선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u> ② ~ ④ (현행과 같음)
-------------------	--